



경기도교육청

수신자 정치하는엄마들 귀하 (우 06939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 402호정 치하는엄마들)

(경유)

제 목 정보 (공개 부분 공개 비공개) 결정 통지서

※ 뒤쪽의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(앞 쪽)

접수번호 10212354	접수일 2022. 12. 29.
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

청구 내용	<p>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입니다.</p> <p>교육당국의 처리 결과가 어떠했는지 공개하여 향후 교내 성폭력 사건의 고발 및 그 처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, 교내 성추행·성폭력 사건의 방지 및 학생보호의 이익과 자율적이고 공정한 인사업무 수행을 위해 시민들에게 정보공개 해야한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(사건번호 20누3816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2020. 12. 11)과</p> <p>학교 성폭력 사건 처리 현황 중 '사건발생 학교명'을 공개하여 더 적극적이고 공정한 업무 수행을 촉진될 수 있도록 공익적 필요를 분명히 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(사건번호 2021구합66241 정보공개처부처분취소 2022. 4. 29)에 따라</p> <p>교육청이 기존 정보공개한 학교들을 포함하여 2018년부터 2021년까지의 학교 내 교사 성폭력 처리 현황 정보를 청구합니다.</p> <p>첨부한 서식을 채워주시고, 사건 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교육청이 파악하거나 감사한 내용, 장학사가 조사했거나 경찰 신고 내용 등에서 가해자 이름 등 개인 정보를 제외하고 최대한 자세히 기술해 별첨해 주십시오.</p> <p>■청구 기간 : 2018년~ 2021년 (4년)</p> <p>■청구 내용 : 첨부 파일 참조</p> <p>첨부1. 판결문(서울고등법원 20누3816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2020. 12. 11)</p> <p>첨부2. 판결문(서울행정법원의 2021구합66241 정보공개처부처분취소 2022. 4. 29)</p> <p>첨부3. 서식_정치하는엄마들_2018_2021_학교_내_성희롱성폭력사안_처리현황_221229</p> <p>첨부4. 서식_정치하는엄마들_2018_2021_학교_내_성희롱성폭력사안_처리현황_사건개요별지_221229</p>
-------	---



공개 내용	첨부파일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.			
공개 일시	2023. 01. 10. 14	공개 장소		
* 수수료를 추가납부 하여야 할 경우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2조에 따라 부득이하게 공개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				
공개 방법	[] 열람·시청 [] 사본·출력물 [x] 전자파일 [] 복제·인화물 [] 기타			
수령 방법	[] 직접 방문 [] 우편 [] 팩스 전송 [x] 정보통신망 [] 전자우편 등			
납부 금액	① 수수료	② 우송료	③ 수수료 감면액	계(①+②-③)
	0원	0원	0원	0원
	납부일	수수료 산정 명세	수수료 납입계좌(입금 시)	
			[]	
* 귀하의 청구에 따른 정보공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상기와 같이 수수료를 산정하였으나, 사본제작 후 수수료 금액이 상이하여 사후 정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.				
비공개 (전부 또는 일부) 근거 조항	개인사생활 침해			
비공개 (전부 또는 일부) 내용 및 사유	비공개 근거 조항 :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·주민등록번호 등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조, 제3조 및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 1항 3호~6호,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 31조 외			

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 내용을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13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.



경기도교육감

지방교육행정주사 김소라
보(일반임기제)

학생생활교육과장 박정행

협조자

시행 학생생활교육과-495(2023. 01. 10.)

우 11759 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 700

전화번호 02-820-0768

팩스번호

02-821-1072

/ byyolla@korea.kr

/ 공개 구분

인쇄일자 : 2023. 01. 10. 17:05:46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]

인쇄자 : 정치하는엄마들

3/4

유의 사항

- 정보공개 장소에 오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지참하셔야 하며,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.
 -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경우: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(주민등록증 등)
 -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: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
 -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: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지 제8호서식의 정보공개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
- 수수료는 **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** 내실 수 있으며,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내실 수 있습니다.
 -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·전자결제 등
 - 수입인지(정부기관) 또는 수입증지(지방자치단체)
- 우송의 방법으로 공개가 가능하다고 통지된 정보를 우편 등으로 받으시려는 경우에는 앞면에 적힌 **납부일**까지 우송료를 현금 또는 우표 등으로 공공기관에 보내셔야 합니다.
-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.
-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**행정심판(서면 또는 온라인 : www.simpan.go.kr) 또는 행정소송**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- 청구인이 통지된 정보의 공개일 후 10일이 지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.
- 청구인은 정보공개시스템 및 타 시스템 연계를 통해 통지된 문서를 대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인날인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